

<붙임2>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요청서

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요청서

※ (*)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 아니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,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신고인	성명(기관·단체명)*				
	연락처 등 개인정보	전화번호* (휴대폰)		이메일*	
		생년월일 (기관·법인번호)			

불법촬영물 등의 유통현황*	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* ☞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주시되, URL 기재가 어려울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)
----------------------	---

신고요청 사유*	☐ 불법촬영물	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
		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,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(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)
	☐ 허위영상물	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·신체·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등을 한 촬영물/영상물/음성물
		☐ 대상자의 얼굴·신체·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등을 하고,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/영상물/음성물(편집·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)
※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중복가능)	☐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	☐ 아동·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*를 표현한 촬영물/영상물 * 성교행위, 유사성교행위, 신체를 접촉·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, 자위행위 등
	☐ 기타	(☞ 그 외 촬영물/영상물이 불법촬영물·허위영상물·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명백히 해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※ 신고요청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(사업자 명)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항목	수집 · 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, 생년월일	신고인 확인,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	3년

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동의(), 동의하지 않음()

신고인(대표자) 성 명
(기관 · 단체명)

(서명 또는 인)